「행복knowhow 연금예금」특약

제1조 적용범위

"행복knowhow 연금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예금거래 기본약관』및『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구성되며, 가입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하여 최장 31년까지 가능하다. 단, 거치기간은 선택, 원리금 지급기간은 필수로 지정한다.

제5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거치기간 이자지급

① 거치기간 이자는 약정한 거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개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단위플러스 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의 기간별 금리로 셈하여 거치기간 종료일에 지정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한다.

②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경우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거치기간 개시일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지급한다.

제7조 원리금 지급기간 이자지급

① 원리금 지급기간의 이자는, 고객이 예금 가입시 최초 납입한 원금 중에서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금액(이하 "만기희망잔액"이라 함)을 따로 지정하고, 만기희망잔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만기일에 지급하며,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리금 지급기간 개시일로부터 원리금지급기간 중(만기일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며, 여기서 원리금 지급기간 개시일은 제4조의 거치기간 종료일의 익일을 말한다.

②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는 '원리금 지급기간 개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하여 매월 동일한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산정하여 지급하며, 원리금지급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후 매3년 해당일마다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원리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해당일로 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원리금 지급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④ 만기일(원리금 지급기간 종료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경우 '원리금 지급기간 개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리금 지급기간 개시일' 및 '매3년 해당일' 고시되는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⑤ 만기일(원리금 지급기간 종료일) 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 이자계산

이 예금의 거치기간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원리금 지급기간 이자계산은 월단위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변경

이 예금은 최초 약정한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0 조 일부해지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거치기간 중에만 총 3회까지 허용한다.

제 11 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이 예금의 원리금 지급기간 중 원리금균등지급에 따른 원금 감소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초 지정한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 한도를 자동 감액처리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전 가입 계좌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